

■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(제11조관련)

구 분	생 활 비 비 율
부양가족이 없는 자	40%
부양가족 1인	35%
부양가족 2인	30%
부양가족 3인 이상	25%

비 고 :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.